
채권 보상대상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현금청산 가능한지

1 질의

채권보상이 되는 소유자의 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 등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?

2 회신

토지보상법에서는 채권보상 대상에 대한 이해 관계자에 대하여 채권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.

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. [2015.10.30. 토지정책과-8003]